

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794호

나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 외 11명

다. 발의일자 : 2019년 7월 31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제대군인들의 군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업 연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3조)

나.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지원정지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부터 6조까지)

다.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, 수당에 관한 규정
(안 제7조부터 9조까지)

라.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 사무에 관한 위탁 규정(안 제10조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 중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발의 되었음.

나.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 지원 현황

-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¹⁾은 해마다 7천명을 넘어서고 있고, 이들에 대해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창업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(제17조).

<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>

구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계	6,191	5,630	6,316	7,362	7,322
장기복무	3,540	3,213	3,725	4,212	3,386
중기복무	2,651	2,417	2,591	3,150	3,936

※ 출처 : 국방부, “2016년 중·장기 전역군인 취업률 조사 결과 보고”, 2017년.

1) 장기복무 제대군인 :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
중기복무 제대군인 :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

- 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·활용을 위해 노력하고,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.
- 현재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4.3%(2016.12. 기준)으로 주요 선진국(미국 95%, 일본 97%, 독일 90%, 프랑스 92%)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시책이 요구됨.
- 국가보훈처는 전국에 권역별로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, 교육,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또한, 창업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과 기술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‘국가보훈정책추진계획(2018~2022)’에 따라 잠재력을 가진 제대군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음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(1)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“제대군인”을 5년 이상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에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
- 또한, “군 기술”을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정보통신, 기계, 의료, 이종산업간 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로 정의하고, 안 제7조의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통해 군 기술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주민등록과 거주를 제대군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지역성을 고려한 것이나, 통상 창업지원 사업들이 창업자의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‘군 기술’을 이종산업간 융복합 분야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,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.

(2) 창업지원(안 제4조~제6조)

- 안 제4조는 제대군인에게 창업 컨설팅과 교육, 창업경영 및 마케팅 지원 외에도 그 밖에 군 기술 활용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수요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또한, 제대군인의 신청과 위원회 심사를 창업지원 절차로 하고(안 제5조), 제대군인의 사망, 타 지방자치단체로 진출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, 「형법」상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였음(안 제6조).
-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의 진출은 창업사업장의 소재지로 지원대상을 넓힐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유로 적합하지 않고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는 과실범도 포함되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.

(3)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(안 제7조~제9조)

- 안 제7조는 위원회가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, 창업지원 대상 군 기술의 선정, 창업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외에 군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시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음(안 제8조).
- 또한,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제9조)

- 위원회는 제대군인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“군 기술”(안 제2조 제2호)의 선정과 창업지원 사업(안 제4조 제3호)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.
- 아울러,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불분명하므로 경제정책실장 또는 비상기획관으로 특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함.
 - 중앙정부에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과 제대군인 창업 지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담당을 하나, 서울시는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실과 예비군·민방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이 있어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과 제대군인의 저조한 취업률을 고려하면, 지방정부가 앞장서 군 기술을 활용한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- 다만, 군 복무 중인 현역군인에게도 창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복무기간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본 조례안은 현재 발의된 ‘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’(유용 의원 대표발의), ‘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안’(홍성룡 의원 대표발의)과 입법 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됨.
 - 8월 20일에 개최된 3개의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‘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’을 토대로 나머지 2개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입법 방향이 제안되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02-2180-8055